## KOSHA Guide C-39-2023

- (3) 작업도중 굴착된 상태로 작업을 종료할 경우는 방호울,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제3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4) 상·하부 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가)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
- (나) 부석제거
- (다)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금지
- (라) 관리감독자 및 신호수 배치
- (5) 굴착면의 기울기가 1: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굴착비탈면에서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나) 안전대 부착 설비는 굴착비탈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(다)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 히 고정하여야 한다.

## 7.2.2 트렌치 굴착

- (1) 통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굴착하는 경우 굴착장소에 방호울 등을 사용하여 접근을 금지시키고 안전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야간에는 KOSHA GUIDE C-52(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)에서 정하는 최소 조도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며 임시로 설치 사용하는 시설물에는 형광벨트,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바닥면의 굴착 깊이를 확인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.